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체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5.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되,”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인임”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제1호 중 “각각”을 “각각 복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1호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
근로자공제회

머.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별표 2의3 제2호코목을 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
제자에 관한 자료

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

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관한 자료

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처
리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신원 내용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
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
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
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
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
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
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 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u>하되</u> , 연임할 수 있 다.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의 임기 등) ----- ----- ----- <u>하며, 두 차례만</u> --- --.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 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u>농업인임</u> 을 확 인할 수 있는 자	1. ----- ----- <u>1천제곱미터 이 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농업인임</u>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 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3.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⑥ (생략)

-----.

-----.

1. -----

----- 각각 복
수로 -----

2.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

-----.

<삭 제>

⑤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9